

# 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⑥

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한다.

## 글 읽는 순서

### II. 건설관련 법령 벌칙규정

#### 1. 벌칙의 종류

#### 2.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벌칙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식의 벌칙

##### 1) 하도급법 적용범위 ..... 지난 호

##### 2) 하도급법령상 벌칙구조

##### 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 ..... 이번 호

##### 4)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위반

##### 5)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기타사항 ... 다음 호

##### 6)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 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①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미교부 또는 허위서면 교부한 원사업자</li> <li>■ 서면미보존 또는 허위서류 작성한 원사업자</li> </ul>	법제3조제1항, 2항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1호  법제3조제1항, 2항 법제25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li>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li> </ul>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p>②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사업자가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여야 함</li> <li>-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li> </ul> </li> </ul> <p>③ 선급금 지급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기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li> <li>-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li> <li>-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li> </ul> </li> </ul>	<p>법제25조의3제1항제2호</p> <p>법제9조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3호 법제30조제1항제3호</p> <p>법제6조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3호 법제30조제1항제3호</p>	<p>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li> <li>•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li> <li>•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li> </ul>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p>④ 하도급대금 지급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li> <li>■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봄</li> <li>■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li> <li>■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li> <li>■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을 교부하여야 함</li> <li>■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li> </ul>	<p>법제13조                  법제25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3호                  법제30조제1항제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li> <li>•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li> </ul>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p>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li> </ul> <p>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 (단, ㉠1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제외)</li> </ul> <p>⑥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단, 감액받은 경우 감액 가능)</li> <li>■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li> <li>■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으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li> </ul>	<p>법제13조의2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3호</p> <p>법제16조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5호 법제30조제1항제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li>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li> <li>•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li> </ul>



**Boss – 왕초**

Jim: “Why is planning a vacation always easy for a married man?”  
George: “Because his boss will tell him when and wife will tell him where.”

짐: “장기간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힘들이지 않고 휴가 계획을 짜는데 그건 왜 그렇지?”  
조지: “그거야 회사 상사가 휴가시기를 정해주고 행선지는 부인이 정해주기 때문 아닌가.”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 중에서

#### 4)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위반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p>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됨</li> <li>■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i> <li>-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i> <li>-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i> <li>-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i> <li>-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i> </ul> </li> </ul>	<p>법제4조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3호 법제30조제1항제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li> <li>•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li> </ul>
<p>② 물품 등의 구매 강제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한 물품·장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됨</li> </ul>	<p>법제5조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3호 법제30조제1항제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li> <li>•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li> </ul>
<p>③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사항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여서는 안됨</li> </ul>	<p>법제8조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3호 법제30조제1항제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li> <li>•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li> </ul>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p>④ 부당반품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li> <li>■ 부당한 반품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li> <li>-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li> <li>-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li> <li>-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li> </ul> </li> </ul>	<p>법제10조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3호                      법제30조제1항제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li> <li>•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li> </ul>
<p>⑤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됨</li> <li>■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li> <li>■ 부당감액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li> <li>-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li> <li>-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li> <li>-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li> </ul> </li> </ul>	<p>법제11조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3호                      법제30조제1항제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li> <li>•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li> </ul>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p>-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금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p> <p>⑥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한 결제청구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li> </ul> <p>⑦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li> </ul> <p>⑧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li> </ul> <p>⑨ 보복조치 또는 탈법행위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가 자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li> <li>■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li> </ul>	<p>법제12조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3호 법제30조제1항제3호</p> <p>법제17조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5호 법제30조제1항제4호</p> <p>법제18조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5호 법제30조제2항제1호</p> <p>법제19조 / 법제20조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5호 법제30조제2항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li> <li>•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li> <li>•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li> <li>•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조치</li> <li>•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li> <li>•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li> </ul>